



보도해명

- 자동차관리 팀 장 김 영 학
사무관 이 광 원
- ☎ 02-2110-8704
- LKWN@moct.go.kr

- 11월 6일 배포 (총2매)

· 즉시 자료입니다.

‘새 자동차번호판’ 기존차량은 구조변경 없이는 안전기준 등에 미달하여 긴 번호판 부착 곤란

1. 보도요지 (동아일보 11.6자 A11면)

- 10월31일 이전 출고차량도 봉인볼트와 조명등의 위치만 약간 수정하면 긴번호판 부착이 가능하며, 독일산 차종은 긴 번호판 부착에 맞는 차종임
- 2004년 1월1일 전국번호판 시행 이후 2004년 5월부터 숫자크기를 약간 줄인 디자인의 번호판을 보급 했으며 지난 3년간 디자인이 5번 변경됨

2. 해명내용

- 10.31일 이전의 기존 차량은 봉인볼트 위치와 조명등이 짧은 번호판을 기준하여 제작된 차량으로서 긴 번호판 부착시 자동차관리법령상 적법하지 않음

○ 따라서 그동안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통하여 기존차량은 짧은 번호판으로, 긴번호판 기준에 맞게 새로 제작되는 차량은 긴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홍보한 바 있음.

○ 독일산 수입자동차의 경우도 번호등과 봉인위치 등이 국내의 짧은 번호판 부착을 전제로 자기인증을 받아 수입된 차량으로서, 긴 번호판 기준에는 맞지 않음(개별 수입사별로 국내 기준에 맞는지 확인 중이거나 설계변경 중에 있음)

○ 기존 차량에 긴 번호판 부착을 위하여는 부착면적과 바뀐 번호등 기준에 적합하고 봉인장치와 번호판 고정위치가 적법하도록 개조가 되어야 하나 개조 이후 적법한지 확인이 곤란

※ 특히 기존에 생산되어 운행중인 자동차가 긴번호판 번호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, 수백 종류의 모든 차종별·연식별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함

□ 2004.1.1부터 시행된 전국번호판 이후에 2004년 5월부터 숫자크기를 약간 줄인 디자인의 번호판을 보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, 11.1부터 시행된 새 번호판으로 처음 변경됨